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 선 미 의원)

의안 번호	25-32
----------	-------

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한선미, 강동오, 고병준,  
김승수, 오욱자,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

## 1. 개정이유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의 수거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 (안 제2조)

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규정 (안 제12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 3. 관계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4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4. 4. ~4 .10..

나. 의견제출: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배출
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
-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 설〉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동 주민 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배출

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14(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미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침부 사유

우리 구 폐의약품 연간 처리량은 10톤 미만으로 연간 수거 및 처리(소각) 비용이 1,000천원 수준임(수거비용: 200천원, 소각비용: 8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녹지국 깨끗한마포과 주하나
연 락 처	02-3153-9201

##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2호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이창헌
연 락 처	02-3153-9216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배출
  - 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
-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의약과 조영미
연 락 처	02-3153-9131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